



	<p>관련된 약정서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p> <p>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 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p> <p>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p> <p>④ 저축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한다.</p> <p>⑤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 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p> <p>⑥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 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p> <p>1.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 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p> <p>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p>	<p>MCI 가입된 주택담보대출 등)</p>
<p><b>제6조(담보) ①(생략)</b> ②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저축은행이 일반적으로</p>	<p><b>제6조(담보) ①(현행과 같음)</b>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 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 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p>	<p>담보처분의 객관성 제고</p>

적당하다고 인정된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저축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3, 2006.7.10>

<신 설>

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 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④ -----,  
-----,  
-----,  
-----,  
----- 제2항 내지 제3항  
-----.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  
-----  
-----  
-----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  
-----.

②-----  
-----  
-----

모든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개정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 설>

-----  
----- 연대보증  
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③----- 연대  
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 연  
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

④ 제7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p><b>제3조(이용매체)</b> ① 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p> <p>1. 인터넷뱅킹 : 개인용컴퓨터(PC),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p> <p>2. 텔레뱅킹 : 전화, 휴대전화</p>	<p><b>제3조(이용매체)</b> ① ----- ----- -----.</p> <p>1. ----- : -----(-), -----(-), <u>휴대전화</u> 등</p> <p>2. ----- : -----, -----</p>	<p>용어의 명확화</p>
<p><b>제5조(이용신청)</b> 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전자금융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등 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호저축은행은 이를 확인 및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u>다만,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나 단순조회 등의 서비스의 경우 신청서 없이 이용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②~③ (생략)</p>	<p><b>제5조(이용신청)</b> ① ----- ----- ----- ----- ----- -----.</p> <p><u>다만, 저축은행의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보유한 개인이용자에 한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신청 할 수 있다.</u></p> <p>② <u>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나 단순조회 등의 서비스의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전자금융 신청 추가</p> <p>제1항 단서조항 이관 및 자구수정</p>
<p><b>제8조(출금계좌 등록)</b> ① 이용자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p>	<p><b>제8조(출금계좌 등록)</b> ①----- ----- -----</p>	<p>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p>

<p><u>서면으로</u>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이용자는 계좌이체의 입금 대상 계좌를 상호저축은행에 <u>서면으로</u>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좌이체는 지정계좌로만 가능하다. 다만, 입금대상 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p>	<p><u>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u>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u> ----,</p> <p>-----</p> <p>-----</p> <p>-----</p> <p>-----</p> <p>-----</p> <p>-----</p> <p>-----.</p>	<p>출금계좌 신청 추가</p> <p>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입금계좌 지정 추가</p>
<p><b>제9조(인터넷 계좌개설 및 해지)</b> ①~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b>제9조(인터넷 계좌개설 및 해지)</b>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을 거친 계좌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출금이 가능하다.</u></p>	<p>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출금 허용</p>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8조(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u></p>	<p>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및 범위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b>제2조(지연배상금)</b> ①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②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③계약금액내대출의 경우 상계 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④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b>제2조(지연배상금)</b> ①----- ----- -----, 기 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p> <p>②----- ----- ----- ----- -----, 여신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또는 기 한의 이익상실일의 다음 영업 일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 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③----- ----- -----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p> <p>④----- ----- 결산기준일 다음 영업일부터 -----.</p>	<p>불합리한 연체 기산일 변경 등</p>
<p><b>제4조(감액·정지)</b> ①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축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p>	<p><b>제4조(감액·정지)</b> ①----- ----- ----- ----- -----</p>	<p>불합리한 연체 기산일 변경 등</p>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 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② (생략)

**제5조(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

① ~ ② (생략)

③ 저축은행은 이자의 원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1조의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초과된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④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제7조(인지세의 부담) ① (생략)**

② <삭제> <2011.8.1>

<신설>

<신설>

\_\_\_\_\_  
\_\_\_\_\_  
\_\_\_\_\_  
\_\_\_\_\_한도 초과된 당일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_\_\_\_\_한도 초과된  
당일 \_\_\_\_\_.

④ \_\_\_\_\_  
\_\_\_\_\_  
\_\_\_\_\_  
\_\_\_\_\_한도 초과된 당일  
\_\_\_\_\_.

**제7조(인지세의 부담)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 (입금 의뢰)**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불합리한  
연체  
기산일  
변경 등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및 범위  
신설

<p>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입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p>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금액			

**(현 행)**

**<약정서 사본 수령 및 설명의무 이행 확인란>**

<p>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핵심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p>	
본 인	(인)

**(개 정)**

**<약정서 사본 수령 및 설명의무 이행 확인란>**

<p>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p>	
본 인	(인)

## 【지상권 설정계약서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6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6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 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p>	<p>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및 범위 신설</p>

## 【**근질권설정계약서**(예적금부금 수익권 유증권 동산용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8조 (비용부담)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8조 (비용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 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u></p>	<p>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및 범위 신설</p>

## 【양도담보계약서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12조 (비용부담)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2조 (비용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 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p>	<p>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및 범위 신설</p>

## 기존고객 적용여부

### □ 신규고객부터 적용 :

-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여신거래약정서 제7조, 지상권설정계약서 제6조, (근)질권설정계약서 제8조, 양도담보계약서 제12조
-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 제공자에 대한 통지)

### □ 기존고객에도 적용 :

-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3조· 제5조· 제8조·제9조, 여신거래약정서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제13조.<약정서 사본 수령 및 설명의무 이행 확인란>